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 . . . (제 회)	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 . . .

1. 의결주문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「시설물안전법」(법률 제17946호, 2021.3.16.)에 따라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협회의 설립을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(안 제26조의2 신설)
- 나.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26조의3 신설)
- 다.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를 규정(안 제26조의4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정관)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업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6.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
7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8. 총회·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26조의3(지도·감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·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제26조의4(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)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10분의 1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(정관)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목적</u> <u>2. 명칭</u> <u>3. 사업</u> <u>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</u> <u>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</u> <u>6.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</u> <u>7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</u> <u>8. 총회 ·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</u> <u>9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</u> <u>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u> <u>11.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3(지도 · 감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 ·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4(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</u>

수)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10
분의 1을 말한다.